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25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, 그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, 현장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지원은 미흡하여,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,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- 나.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(안 제5조)
- 다.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 등 (안 제6조)
- 라.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(안 제7조)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6월 8일 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4, FAX 817-1474, E-mail : dongsuyeom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장기요양기관"이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- 2. "장기요양요원"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
  - 2.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
  - 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6조(처우 개선 사업 등)**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- 2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 사업
- 3.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- 4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)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)**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